

[붙임2]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- 호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. 9. 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전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수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협약의 체결 시 공증 및 위탁개시 전 인계·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,6조)
- 마. 사업비 일정규모 이상 사무의 경우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그 밖의 지도·점검, 사무편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~ 제11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참조 : 정책기획담당관, 주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<연희동 168-6>, 우 : 120-703), 전화 : 330-1332, FAX : 330-1442, E-mail : chanby00@sdm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(규칙)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 
【<http://www.sdm.go.kr/>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